



Unbundling Competition

에피소드 6: 유럽에서의 아시아 투자 심사 – 외국 보조금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EC) 백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HSF 홍콩 사무소의 파트너 및 아시아 경쟁법 (독점규제법) 분야 책임자인 Adelaide Luke와 EMEA 경쟁법 책임자이자 HSF 브뤼셀 사무소의 매니징 파트너인 Kyriakos Fountoukakos가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하 EC) 에서 발간한 “외국 보조금 관련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위한 백서”(백서)와 EU내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백서는 EC 및 개별 회원국들이 EU에 들어오는 외국 투자를 더욱 면밀히 살피는 시기에 발간됩니다. EU 국가 원조 규칙(회원국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칙)과 상이하게, 외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EU 시장 내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EC가 면밀히 살필 수 있게 하는 규제 권력이 없습니다. 백서는 EC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여 EU 및 기타 지역의 기업들이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백서는 세 가지의 “모듈”을 고려합니다. 모듈1은 EU 내부 시장에 이미 영향을 미치는 외국 보조금을 EC가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두 단계의 분석 체계를 제시합니다. 먼저 EC는 직접적인 수출 금융지원부터 무제한 국가 보증까지의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외국 “보조금”을 확인합니다. 이후 EC는 해당 보조금으로 인한 왜곡 효과를 평가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배상금 또는 행동/구조적 개선책을 포함한 EC의 개선책 시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듈2 및 3은 사전신고 체제 도입을 제시합니다. 모듈2는 비(非)EU 당국으로부터 EU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받는 기업들이 관련 거래 완료 전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EU의 기업결합신고체제와 유사(및 동시병행적으로)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단, 예시로, 비지배적 지분 인수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는 등 적용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모듈3 또한 EU 내의 공공조달에 참여하거나 EU 자금신청을 하는 외국 보조금 수여자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바를 제안합니다.

모듈2에 따른 신고(이는 모듈3 또한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높습니다)는 상당히 낮은 신고 기준 (EUR200,000 이상의 보조금 금액)에 의해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 거래 전 3년 이내에 받은 보조금 및 거래 이후 1년동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을 포함하는 확장된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또는 회원국의 국가적 단계에서만 부과되는 경우)임에도 외국 보조금에 대한 신고가 요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야기하며, 거래 계획에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가 됩니다.

현 단계의 백서는 단지 제안서일 뿐이지만, 만약 실제 입법이 된다면 준공공적인 성격을 띄거나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는 아시아의 많은 기업들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안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미리 계획할 것을 권고합니다.

